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0. 12.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분적인 조례 자구 수정(안 제1조~제7조)
- 소상공인 정의 근거 현행화(안 제2조)
- 소상공인 직접 비용 지원 근거 및 재난피해 소상공인 비용지원 항목 신설(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등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범위 확대와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사업 뿐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4조제4호에서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비용 지원'을 명시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음.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의 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0. 2. 4. 제정되어 2021. 2. 5.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기본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78 호
----------	---------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분적인 조례 자구 수정(안 제1조~제7조)
- 나. 소상공인 정의 근거 현행화(안 제2조)
- 다. 소상공인 직접 비용 지원 근거 및 재난피해 소상공인 비용지원 항목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3)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5)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라.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를 “조례는”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 내”를 “안”으로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중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을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위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영안정지원)”을 “(경영안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를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사업”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척을 위한 사업”을 “개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공사업”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창업과 경영안정”을 “경영안정지원 등”으로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

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비용 지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지원 등을”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지역</u>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 -- <u>안</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u>창업과 경영안정지원</u>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 ----- ----- -- <u>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이라 한다)</u> 을 위한 ----- --.

제4조(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
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
공사업
4. <신 설>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 등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
성·운영)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
다.

1. ~ 4. (생 략)

제4조(경영안정지원 등) -----

-----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
에게 그 비용을 지원---

1. -----
----- 교육
2. -----
----- 개척
3. ----- 제
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
인에 대한 경영안정 비용 지
원
5. ----- 경영안정
지원 등-----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
성·운영)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지원 등을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
1. <u>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u> 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u>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